

KCGS Report

제16권 6호 | 통권 제198호
2026. 6.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6권 6호

발행일 :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 이인표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6권 6호 | 2026. 6.

● ESG 동향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화와 기업의 대응 행태 분석 2

● Global News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분기 보고 완화 추진
- 개정안 내용 및 시장 평가 19
2. SEC, 기후공시 규칙 폐지 제안 21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화와 기업의 대응 행태 분석

강성명*, 고영제**

- ▶ 2025년 제2차 상법 개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및 합산 3% 의결권 제한 일원화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감사위원 선임 구조를 분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행태 및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 분석 결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23% 증가한 672개사, 선임된 감사위원 수는 23.30% 증가한 1,217명으로 확인되며, 특히 분리선임 감사위원 최소 2인 규제에 대응하여 분리선임 방식의 비중이 72.47%로 크게 확대됨
- ▶ 재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 재선임 주기의 단축, 다회 재선임 및 조기 재선임의 증가, 임기 확대 행태가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관찰되며,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남
- ▶ 합산 3% 의결권 제한 일원화는 특수관계인 지분 분산을 통한 의결권 확대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유효 의결권 감소 효과가 곧바로 감사위원 선임 결과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의결권 제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민감도 분석 결과, 규제 강도 확대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유효 의결권 감소분이 커질수록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부결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주주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중요해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및 일반주주의 영향력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1) 기업은 조기 재선임, 임기 확대 등 선임 의사결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 기관투자자는 임기 구조 변화와 재선임 대상 감사위원이 기존 임기 중 독립적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3) 규제당국은 합산 3% 제도 및 전자투표 특례 환경에서의 안건 가결 구조와 일반주주 참여 수준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보완 및 주주 간 협력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참여 기반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강성명 연구원, smkang@cgs.or.kr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고영제 연구원, youngjeho@cgs.or.kr

서론

-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집중된 소유구조 하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제도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까지 인정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통한 지분 분산 보유 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¹⁾, 감사위원 분리선임 역시 최소 1명 선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본래의 독립성 확보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²⁾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개정 상법은 (1) 감사위원 선·해임 시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고(2026년 7월 시행), (2)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분리선임 감사위원 최소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함(2026년 9월 시행)
- 한편, 개정법 시행 이전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감사위원의 조기 재선임 및 임기 확대 등을 통해 규제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임³⁾
- 이러한 행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일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위원 선임 구조와 임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리뷰는 유가증권(이하 “KOSPI”) 및 코스닥(이하 “KOSDAQ”) 상장회사의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감사위원 선임 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통계를 통해 제도 변화가 선임 패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 제한 방식의 변화가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효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1) ‘3%룰’ 강화, 사조그룹 출자구조 향방은, 더벨, 2025.07.04.

2) 2차 개정 상법(2025. 8. 25. 국회 통과) 소개 및 분석, 법무법인 지평, 2025.08.25.

3) “합산 3%를 전에”...감사위원 미리 뽑는 기업들, 서울경제, 2026.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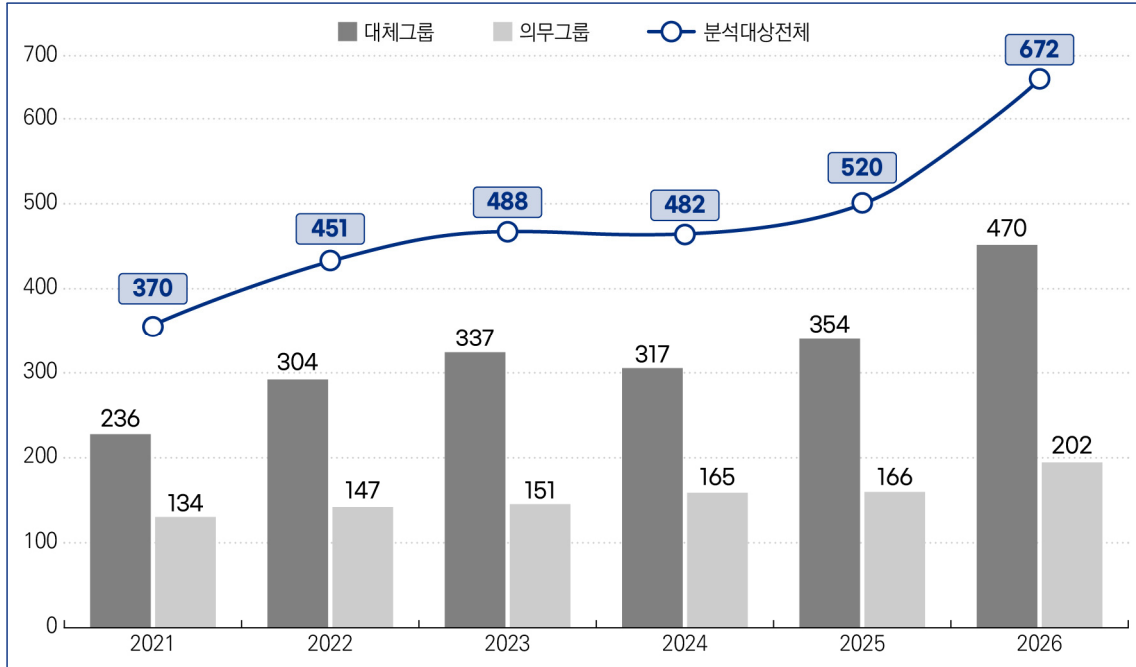
분석 개요

- 분석 대상은 2026년 1월 초 기준 KOSPI 및 KOSDAQ 상장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발생한 감사위원 선임 건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함
 -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의무, 3% 의결권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상장회사의 상장 이후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한정함
- 분석 대상 데이터는 과거 감사위원 선임 패턴을 나타내는 2021년~2025년(이하 “과거 5년”) 데이터와, 제도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행태가 관측되는 2026년 데이터를 구분하여 구성함
 - 법원이 제공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상 감사위원의 취임 및 재임 이력을 토대로 과거 5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함
 - 2026년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활용함
-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은 다음 출처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구성함
 - 감사위원의 임기와 분리선임 여부는 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결과 공시 데이터를 활용함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수는 DART에 공시된 정기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함
 - 그 외 재무 및 통제 변수들은 2025년 말 기준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함
- 본 분석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말 자산총계에 따라 (1) 상근감사 대체군(자산총계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이하 “대체그룹”), (2)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군(자산총계 2조 원 이상, 이하 “의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감사위원 선임 현황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감사위원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그래프1〉&〈표1〉 참고), 과거 5년간 나타난 선임 규모와 비교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기업 수 및 인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2025년 대비 2026년 감사위원을 선임한 기업 수는 672개사(520개사→672개사, +29.23%)로 증가하였고, 선임 인원 수 역시 1,217명(987명→1,217명, +23.30%)으로 증가함

〈그래프 1〉 2021년~2026년 감사위원 선임 기업 수



〈표 1〉 2021년~2026년 감사위원 선임유형별 선임 인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신규선임	293	378	371	350	357	482
	재선임	172	235	293	252	303	381
	전체	465	613	664	602	660	863
의무그룹	신규선임	148	140	169	164	174	195
	재선임	121	142	127	162	153	159
	전체	269	282	296	326	327	354
분석대상전체	신규선임	441	518	540	514	531	677
	재선임	293	377	420	414	456	540
	전체	734	895	960	928	987	1217

1) 등기 이력상 선임 연도 이전에 감사위원 재임 이력이 없는 경우를 신규선임, 재임 이력이 있는 경우를 재선임으로 정의함

- 이러한 이례적인 증가는 통상적인 임기 만료나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며⁴⁾, 상법 개정에 대응한 기업의 선제적 움직임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업의 대응 행태는 자산규모와 선임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의무그룹은 재선임 인원 수(153명→159명, +3.92%)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신규선임 인원 수(174명→195명, +12.07%)는 소폭 증가하였고, 대체그룹은 신규선임 인원 수(357명→482명, +35.01%)와 재선임 인원 수(303명→381명, +25.74%)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⁵⁾⁶⁾
- 2026년 감사위원 선임 양상은 제도 변화가 기업의 행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하에서는 감사위원의 선임 방식과 재선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는 규제 적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

감사위원의 이사회 겸직 구조와 분리선임 현황

- 감사위원 선임 시점에 함께 부여된 이사회 내 지위를 분석한 결과(〈표2〉 참고), 과거 5년 및 2026년 전 기간에 걸쳐 감사위원의 90% 이상이 사외이사 지위를 겸하여 선임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 선임 시 부여된 이사 유형에는 시점에 따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2026년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방식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변화가 관찰됨
-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동시에 이사로도 선임하는 방식이 확대된 반면, 이미 이사인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방식(〈표2〉 기타)은 27명(46명→27명, -41.30%)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 이는 기업들이 분리선임 감사위원 최소 2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존 이사의 감사위원 추가 선임보다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방식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4)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도입하고 설치한 회사는 18개사, 폐지한 회사는 7개사로 순증가 규모는 11개사에 불과함. 해당 기업들이 최소 3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증가 인원은 33명 수준에 그쳐, 2026년의 감사위원 선임 기업 수 및 인원 수 급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일반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과 달리 감사위원 선임 기업 수와 인원 수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6) 등기와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간 성명 또는 생년월 정보가 상이하거나, 등기상 취임·종임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규선임으로 간주하여 분류함

〈표2〉 2021년~2026년 감사위원 선임과 동시에 부여된 이사 유형별 인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기타비상무이사	3	14	16	11	20	20
	사내이사	1	7	3	2	5	0
	사외이사	426	556	616	557	611	823
	기타	35	36	29	32	24	20
	전체	465	613	664	602	660	863
의무그룹	기타비상무이사	0	1	1	1	0	0
	사내이사	5	3	6	4	3	2
	사외이사	255	268	273	302	302	345
	기타	9	10	16	19	22	7
	전체	269	282	296	326	327	354
분석대상전체	기타비상무이사	3	15	17	12	20	20
	사내이사	6	10	9	6	8	2
	사외이사	681	824	889	859	913	1168
	기타	44	46	45	51	46	27
	전체	734	895	960	928	987	1217

1) 감사위원 선임 이전에 동일 회사의 이사로 먼저 선임되어 이사 선임 연도와 감사위원 선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기존 이사회 구성원이 추후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를 나타냄

□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 인원 수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표3〉 참고),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여 일관된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6년에 선임된 인원 수는 과거 5개년 평균(307.4명) 대비 약 2.87배인 882명으로 나타남

○ 대체그룹과 의무그룹 모두 2026년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 수가 각각 전년 대비 623명(230명→623명, +170.87%), 259명(106명→259명, +144.34%)으로 급증하였으며, 분석대상전체의 분리선임 비중은 72.47%에 해당함

□ 반면, 일반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이하 “일괄선임”)된 감사위원 수는 2026년에 335명으로 나타나, 전년 637명 대비 47.41% 감소하여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 분리선임과 일괄선임 간의 이러한 대칭적인 증감은, 기업들이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제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기보다 일괄선임 감사위원 자리를 분리선임 감사위원 자리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아울러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된 감사위원 882명 중 395명(44.78%)은 해당 기업에서 과거 감사위원으로 재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선임으로의 대체가 신규 인선분 아니라 기존 감사위원의 재선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 선임 기업 수 및 인원 수의 증가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확대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며, 이하에서는 재선임 주기 및 임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인적 구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봄

〈표 3〉 2021년~2026년 감사위원 선임방식별 선임 인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일괄선임	215	398	464	339	418	240
	분리선임	217	177	161	229	230	623
	전체	432	575	625	568	648	863
의무그룹	일괄선임	125	205	196	189	219	95
	분리선임	122	73	91	131	106	259
	전체	247	278	287	320	325	354
분석대상전체	일괄선임	340	603	660	528	637	335
	분리선임	339	250	252	360	336	882
	전체	679	853	912	888	973	1217

1) 해당 연도 비상장 기업, 주주총회결과 공시상 세부 선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합병 안건에 포함된 경우 등), 공시 정보 오류로 등기 정보와 결합할 수 없는 기업으로 인해 앞서 표2의 관측치와 차이가 나타남

재선임 주기 단축과 감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제한

- 동일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의 직전 선임일부터 당해 주주총회일(또는 등기상 취임일)까지 기간(이하 “재선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표4〉 참고), 2026년은 과거 5년과 달리 재선임 기간이 단기 구간에 집중되며 재선임 주기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전체 기준 직전 선임 이후 1년 내 재선임된 사례는 2025년 83건에서 2026년 157건으로 약 1.9배 증가함
 - 전체 재선임 중 1년 이하 기간의 비중은 18.20%에서 29.07%로 상승한 반면, 2년 초과 기간의 비중은 56.80%에서 41.48%로 감소하여 과거 5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선임 시점의 단기화가 관찰됨
- 한편, 동일 기업 내 재선임된 감사위원의 누적 선임 횟수를 분석한 결과(〈표5〉 참고), 2026년에는 과거 5년 대비 2~3회 재선임이 확대된 반면, 4회 이상 재선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분석대상전체 기준 2회차 재선임은 410명으로 전년 대비 13.57%, 3회차 재선임은 93명으로 5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재선임 중 2회차 재선임 비중은 전년 79.17%에서 75.93%로 감소한 반면, 3회차 재선임 비중은 13.16%에서 17.22%로 상승하여, 2026년에 재선임된 감사위원은 상대적으로 재선임 경험이 있는 3회차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확대됨을 보여줌

〈표 4〉 2021년~2026년 재선임 기간에 따른 감사위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1년 이하	41	34	33	38	45	110
	1년 초과 2년 이하	49	79	62	77	67	103
	2년 초과 3년 이하	73	114	192	130	177	155
	3년 초과	9	8	6	7	14	13
	전체	172	235	293	252	303	381
의무그룹	1년 이하	34	35	37	56	38	47
	1년 초과 2년 이하	47	53	42	46	47	56
	2년 초과 3년 이하	40	53	45	59	64	54
	3년 초과	0	1	3	1	4	2
	전체	121	142	127	162	153	159
분석대상전체	1년 이하	75	69	70	94	83	157
	1년 초과 2년 이하	96	132	104	123	114	159
	2년 초과 3년 이하	113	167	237	189	241	209
	3년 초과	9	9	9	8	18	15
	전체	293	377	420	414	456	540

1) 3년 초과 관측치에는 임기 만료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포함됨

〈표 5〉 2021년~2026년 선임 횟수에 따른 감사위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2회	147	199	249	200	241	292
	3회	18	30	29	45	43	63
	4회	3	4	13	3	13	17
	5회	2	1	1	4	3	5
	6회	2	1	1	0	3	4
	전체	172	235	293	252	303	381
의무그룹	2회	91	110	89	105	120	118
	3회	24	20	24	37	17	30
	4회	2	11	8	12	10	6
	5회	2	0	6	6	4	5
	6회	2	1	0	2	2	0
	전체	121	142	127	162	153	159
분석대상전체	2회	238	309	338	305	361	410
	3회	42	50	53	82	60	93
	4회	5	15	21	15	23	23
	5회	4	1	7	10	7	10
	6회	4	2	1	2	5	4
	전체	293	377	420	414	456	540

- 특히 사외이사는 동일 기업 내 재임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선임 기간의 단기화 및 3회차 재선임 비중의 증가는 제한된 기간 내 동일 인물의 연속 선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감사위원회의 인적 쇄신이 제한되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조기 재선임 행태

- 재선임 주기 단축과 반복 재선임이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조기 재선임 행태와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의 감사위원 선임 및 임기 운영 현황을 분석함
- 조기 재선임은 직전 감사위원 선임 시 승인받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동일인을 당해 주주총회에서 다시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과거 승인받은 임기와 재선임 기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식별함
 - 분석 대상 데이터는 2022년~2026년에 재선임된 감사위원 중 직전 선임 건이 2021년~2025년에 존재하는 경우만 포함하며⁷⁾, 직전 선임 당시 해당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는 제외됨
- 분석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기 재선임 건수는 매년 5~11건에 불과할 정도로 예외적으로 발생하였던 반면, 2026년에는 11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확인된 재선임 주기 단축 현상과 연결되며, 분리선임 감사위원 확대 등 제도 변화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및 임기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조기 재선임 사례를 잔여임기별로 살펴본 결과(〈표6〉 참고), 잔여임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감사위원인 경우가 68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감사위원인 경우가 48명으로 나타나, 임기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감사위원들의 조기 재선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7) 분석 대상이 되는 감사위원 재선임 데이터는 다음으로 5가지로 구분됨. ① 2021년 선임 후 2022~2024년 재선임, ② 2022년 선임 후 2023~2025년 재선임, ③ 2023년 선임 후 2024~2026년 재선임, ④ 2024년 선임 후 2025~2026년 재선임, ⑤ 2025년 선임 후 2026년 재선임

〈표 6〉 2021년~2026년 잔여임기별 조기 재선임 감사위원 수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1년 이상 2년 미만	2	5	4	3	50
	2년 이상 3년 미만	2	2	3	1	37
	전체	4	7	7	4	87
의무그룹	1년 이상 2년 미만	0	0	4	6	18
	2년 이상 3년 미만	1	0	2	1	11
	전체	1	0	6	7	29
분석대상전체	1년 이상 2년 미만	2	5	8	9	68
	2년 이상 3년 미만	3	2	5	2	48
	전체	5	7	13	11	116

- 선임유형별로도 살펴본 결과(〈표7〉 참고), 조기 재선임 116건 중 111건(95.7%)이 분리선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업들이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존 감사위원을 임기 만료 이전에 재선임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이러한 조기 재선임 방식은 이미 주주가 승인한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음에도 다시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기의 실질적 의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표 7〉 2021년~2026년 선임유형별 조기 재선임 감사위원 수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일괄선임	4	6	7	4	5
	분리선임	0	1	0	0	82
	전체	4	7	7	4	87
의무그룹	일괄선임	1	0	6	7	0
	분리선임	0	0	0	0	29
	전체	1	0	6	7	29
분석대상전체	일괄선임	5	6	13	11	5
	분리선임	0	1	0	0	111
	전체	5	7	13	11	116

임기 확대 행태

- 앞서 확인된 조기 재선임 행태에 더해, 기업들은 차기 규제 적용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규제 시행 직전 선임되는 감사위원에게 법정 최대 임기를 부여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 감사위원 평균 임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표8〉 참고), 2026년 분석대상전체 기준 평균 임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비중은 70.39%(473개사)로 과거 5년간의 64~66%(230~330개사) 수준 대비 증가한 반면, 평균 임기가 1년 이하인 기업 비중은 소폭 감소함
-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그룹에서는 평균 임기 구간별 비중이 2025년 대비 $\pm 1\%p$ 이내에서 변동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2026년 평균 임기의 증가가 주로 의무그룹 내 기업들의 임기 운영 방식 변화에 기인한 결과임을 나타냄

〈표 8〉 2021년~2026년 평균 임기 및 기업-연도-임기구간별 기업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평균(년)	2.61	2.66	2.66	2.59	2.63	2.62
	1년 이하	10	12	16	18	17	27
	1년 초과 2년 이하	59	69	71	78	85	111
	2년 초과 3년 이하	158	210	234	207	246	332
	전체	227	291	321	303	348	470
의무그룹	평균(년)	2.41	2.37	2.36	2.37	2.40	2.58
	1년 이하	11	19	19	19	14	8
	1년 초과 2년 이하	44	45	50	54	63	53
	2년 초과 3년 이하	72	81	79	89	88	141
	전체	127	145	148	162	165	202
분석대상전체	평균(년)	2.54	2.57	2.57	2.52	2.55	2.61
	1년 이하	21	31	35	37	31	35
	1년 초과 2년 이하	103	114	121	132	148	164
	2년 초과 3년 이하	230	291	313	296	334	473
	전체	354	436	469	465	513	672

- 재선임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직전 임기와 현재 임기를 비교하여 개별 임기 연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표9〉 참고), 2026년 분석대상전체 기준 임기 연수가 증가한 사례는 전년 22명(2.23%)에서 54명(4.44%)으로 확대됨

- 특히 임기가 증가한 54명 중 47명(87.04%)의 임기가 최대 임기인 3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재선임 과정에서 임기 확대를 통해 차기 감사위원 선임 시점을 늦추는 규제 적용 지연 행태가능성을 시사함

〈표 9〉 2025~2026년 직전 임기 대비 현재 임기 증감별 재선임 감사위원 수

구분		임기 증가		임기 감소		임기 유지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대체그룹	1년 이하	0	0	12	13	37	34
	1년 초과 2년 이하	5	7	9	23	48	65
	2년 초과 3년 이하	6	25	0	0	155	170
	전체	11	32	21	36	240	269
의무그룹	1년 이하	0	0	9	7	29	19
	1년 초과 2년 이하	4	0	6	7	34	40
	2년 초과 3년 이하	7	22	0	1	62	60
	전체	11	22	15	15	125	119
분석대상전체	1년 이하	0	0	21	20	66	53
	1년 초과 2년 이하	9	7	15	30	82	105
	2년 초과 3년 이하	13	47	0	1	217	230
	전체	22	54	36	51	365	388

- 1) 직전 임기는 동일 기업에서 해당 연도에 재선임된 감사위원이 이전 감사위원 선임 시 부여받은 임기를 의미함
 - 한편,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임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표10〉 참고), 2년 이하 임기 비중은 감소한 반면 2년 초과 3년 이하 임기 비중은 증가함
 - 분석대상전체 기준 2년 초과 3년 이하 임기 비중은 2025년 53.27%(179명)에서 2026년 67.91%(599명)로 증가한 반면, 1년 이하 임기 비중은 11.61%(39명)에서 7.26%(64명)로, 1년 초과 2년 이하 임기 비중 35.12%(118명)에서 24.83%(219명)로 각각 감소함
 - 즉, 감사위원 평균 임기와 재선임 및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임기 분포에서 과거 패턴과는 다른 임기 확대 및 3년 임기 중심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시점이 늦춰지게 되어 합산 3% 룰의 적용 시점 역시 지연되는 구조가 형성됨

〈표 10〉 2021년~2026년 임기구간별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체그룹	1년 이하	11	9	16	22	21	42
	1년 초과 2년 이하	60	33	57	39	67	140
	2년 초과 3년 이하	146	135	88	168	142	441
	전체	217	177	161	229	230	623
의무그룹	1년 이하	16	21	26	28	18	22
	1년 초과 2년 이하	44	23	42	29	51	79
	2년 초과 3년 이하	62	29	23	74	37	158
	전체	122	73	91	131	106	259
분석대상전체	1년 이하	27	30	42	50	39	64
	1년 초과 2년 이하	104	56	99	68	118	219
	2년 초과 3년 이하	208	164	111	242	179	599
	전체	339	250	252	360	336	882

합산 3% 일원화에 따른 영향

- 합산 3% 일원화에 따른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수와 지분율을 기준으로 유효 의결권 감소분을 산출하고, 이러한 지배구조의 차이가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대응 행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뒤, 의결권 제한 비율(1~5%)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2026년 3월 말 기준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KOSPI 및 KOSDAQ 상장회사를 분석 표본으로 하여, 2025년 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수($i = 1 \sim n$)와 그들의 지분율(S_i)을 기준으로 개별 3%와 합산 3% 간의 유효 의결권 감소분(Δ)을 아래처럼 정의함

$$\Delta = \sum_{i=1}^n \min(S_i, 3\%) - \min\left(\sum_{i=1}^n S_i, 3\%\right)$$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수 평균(8.94명)과 지분율 평균(45.65%)을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균적인 유효 의결권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11〉 참고),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그룹에서 유효 의결권 감소분이 평균 12.80%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또한 그룹 간 유효 의결권 감소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합산 3% 일원화에 따른 의결권 감소 효과는 지분율 크기보다는 특수관계인 수를 통한 지분 분산 구조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분율이 평균 이상(이하)인 그룹 내에서 특수관계인 수에 따른 평균 유효 의결권 차이는 8.22%p(5.09%p)로, 특수관계인 수가 평균 이상(이하)인 그룹 내에서 지분율에 따른 평균 의결권 차이인 5.04%p(1.91%p)를 상회함

〈표 1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수와 지분율에 따른 유효 의결권 차이(Δ)

구분	수 ↑	수 ↓	차이(%p)
지분율 ↑	12.80	4.58	+8.22***
지분율 ↓	7.76	2.67	+5.09***
차이(%p)	+5.04***	+1.91***	-

1) 표에 나타나지 않은 (지분율 ↓, 수 ↑) 그룹과 (지분율 ↑, 수 ↓) 그룹 간의 차이(3.18%p, $t = 5.13$)와 (지분율 ↑, 수 ↑) 그룹과 (지분율 ↓, 수 ↓) 그룹 간의 차이(10.13%p, $t = 11.78$)를 포함해 그룹 간 차이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다만 이러한 그룹별 유효 의결권 감소분의 차이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행태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실증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 감사위원 조기 재선임, 임기 확대 및 시차임기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유효 의결권 감소 효과의 차이가 곧바로 선임 구조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시사함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효 의결권 감소가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12〉 참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개별 3% 기준으로 가결된 1,208개의 안건 중 합산 3% 기준 적용 시 1,086건(89.90%)은 여전히 출석 지분율 50%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합산 3% 일원화 규제는 전자투표 적용시 감사위원 선임 122건(10.10%)의 결과를 부결로 전환하는 효과를 보임
- 나아가 의결권 제한 비율을 1%에서 5%로 단계적으로 조정된 민감도 분석 결과, 합산 1% 기준 적용 시 출석 지분율 50%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은 1,007건(83.36%)으로 감소하여, 규제 강도 확대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감소 효과가 커질수록 부결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합산 3% 일원화를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는 동시에, 향후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일반주주의 참여 수준과 의결권 행사 행태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전자투표 기반 의결정족수 특례는 일반주주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안건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⁸⁾,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일반주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여부뿐 아니라 일반주주 참여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와 실제 일반주주 출석률을 고려한 조건부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2〉 합산 일원화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

보통결의		합산 1%	합산 2%	합산 3%	합산 4%	합산 5%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충족	593	620	660	696	729
	미충족	615	588	548	512	479
출석주식수의 1/2 초과	충족	1,007	1,052	1,086	1,112	1,132
	미충족	201	156	122	96	76
가결률		47.85%	49.92%	53.31%	55.96%	59.02%
가결률(전자투표 도입시)		83.36%	87.09%	89.90%	92.05%	93.71%

1)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개별 3% 룰 하에 가결된 감사위원 선임 안건 1,208건(찬성률 미공시 및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데이터 없는 안건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함. 공시된 찬성률을 바탕으로 출석 지분율을 역산한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개별 3% 적용)을 차감하여 일반주주 지분율을 산출하고 합산 1~5% 룰 적용 시의 영향을 검토함

감사위원 간의 시차임기 현황

- 과거에는 분리선임 감사위원과 일괄선임 감사위원 간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하는 형태로 시차임기가 나타난 반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분리선임 감사위원 간 임기 만료 시점이 분산되는 형태가 확인됨
 - 감사위원 선임과 동시에 시차임기를 적용한 회사는 64개사(9.52%)로, 이 중 분리선임 감사위원 간 임기 차이가 설정된 회사는 48개사(75.00%)로 나타남
- 분리선임 감사위원 2인을 선임하면서 시차임기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1) 2인 모두 신규선임 후 임기 연수를 달리 설정한 경우(A사), (2) 1인은 신규선임, 1인은 재선임하면서 임기 연수를 조정된 경우(B사), (3) 2인 모두 재선임(조기 재선임 포함)하되 당해 회사 내 잔여 재임기간을 고려하여 임기 연수를 축소된 경우(C사) 등 다양한 방식이 확인됨
- 분리선임 감사위원 간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하는 경우, 주주가 동일 시점에 복수의 감사위원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 감사위원회에 대한 일괄적인 인적 구성 변경이 어려워짐

8) 상법 제409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 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음

- 특히 분리선임 감사위원 간에도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은 주주가 동일 시점에 복수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의결권을 배분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집중투표제가 전제하는 의결권 배분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13〉 2026년 정기주주총회 분리선임 감사위원 간 시차임기 사례

구분	정관 규정	선임 이사	최초 선임 시점 (분리선임 이력)	최초 임기	분리선임 임기
A사	제3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삼년 이내 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단 임기가 재임중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만료할 때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A1	2026.03 (-)	-	3년
		A2	2026.03 (-)	-	2년
B사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정한 각각의 기간 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B1	2026.03 (-)	-	3년
		B2	2024.03 (-)	2년	1년
C사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C1	2023.03 (0)	3년	3년
		C2	2022.03 (-)	3년	2년

- 1) 최초 선임 시점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최초 선임된 시점을 나타냄
- 2) C2 후보의 경우 3년의 임기 수행 후 2025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임기 3년)되었으나, 잔존 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분리선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년)됨

결론

-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3% 의결권 제한 제도는 과도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상법 개정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방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기업 수와 선임된 감사위원 수가 과거 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분리선임 감사위원 최소 2인 규제에 대응하여 분리선임 방식의 비중이 72.47%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9) 법무부 상사법무과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2호-2025년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원혜수, 2025.11.13.

- 또한 분리선임된 감사위원 882명 중 395명(44.78%)은 해당 기업에서 과거 감사위원으로 재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규 인선분 아니라 기존 일괄선임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전환 및 기존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재선임을 통해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응 행태가 나타남
- 재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 재선임 주기의 단축, 다회 재선임 및 조기 재선임의 증가, 임기 확대 행태가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관찰되며,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남
 - 대체그룹에서는 조기 재선임을 통한 대응이 주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 의무그룹에서는 재선임된 감사위원의 임기 확대를 통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 회피 또는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정 상법의 취지와 달리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늦추고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3% 의결권 제한의 합산 기준 일원화는 특수관계인 지분 분산에 따른 의결권 확대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규모보다 특수관계인 수가 많은 기업에서 의결권 제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다만 합산 3% 일원화에 따른 유효 의결권 감소 효과가 곧바로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방식이나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합산 기준 의결권 제한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감소 효과가 클수록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부결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반주주의 참여 수준 및 의결권 행사 행태가 선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적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와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가 요구됨
 - 기업은 감사위원 선임 시 조기 재선임, 임기 확대, 시차임기 구조 형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관투자자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검토 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임기 구조 변화와 더불어 재선임 감사위원의 과거 임기 중 실질적 견제 기능 및 독립성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규제당국은 합산 3% 일원화 및 전자투표 기반 의결정족수 특례가 결합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안건 가결 구조 및 일반주주 참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효과가 특정 대응 행태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 공시체계 및 제도 전반의 보완과 더불어 일반주주 영향력 제고를 위한 주주 간 협력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등 참여 기반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분기 보고 완화 추진 - 개정안 내용 및 시장 평가

최은지*

- 2026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가 기존 분기 보고(Form 10-Q) 대신 반기 보고(Form 10-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¹⁾
 - 현재 미국 증권거래법(Exchange Act) Section 13(a) 또는 15(d) 적용 상장사는 Form 10-Q를 통한 분기 보고가 의무화 되어있음
 - 본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은 기존 분기 보고서 3건 및 연간 보고서 1건 대신 새로운 양식인 Form 10-S를 통한 반기 보고서 1건과 연간 보고서 1건만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본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기업이 사업 전략 및 투자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보고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음²⁾
 - SEC는 이를 통해 기업의 상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IPO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임
 - 또한 SEC는 미국 상장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 등을 규정하는 Regulation S-X를 반기 보고 체계에 맞게 개정하며, 재무제표 요건을 보다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시 의무 완화는 분기 보고에 따른 단기 실적 압박을 완화하여, 경영진이 장기적인 사업 및 자본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회복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함³⁾

- 다만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① 투자자 정보 접근성 및 시장 투명성, ② 기업 내부 거버넌스 및 실무적 부담, ③ 미국 시장 특수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① 투자자 정보 접근성 및 시장 투명성 (Glass Lewis⁴⁾)
 - 분기 보고는 단순히 의무적인 공시 수단을 넘어, 투자자가 경영진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 공시 의무 완화 시 기업의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ejchoi@cgs.or.kr

1) SEC Proposes Amendments to Permit Optional Semiannual Reporting by Public Companies, SEC, 2026.05.05.

2) Statement on Proposing Release for Semiannual Reporting, Paul S. Atkins, SEC, 2026.05.05.

3) Market Brief: Examining the SEC's Semiannual Reporting Rule as a Governance Proposal, Glass Lewis, 2026.05.21.

4) 3)과 동일

- 이는 특히 시장 불안 국면에서 투자자 신뢰 약화 및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시 의무 완화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공시 중심에서 관여활동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경영진과의 직접 소통 채널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는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② **기업 내부 거버넌스 및 실무적 부담 (PwC⁵⁾, Deloitte⁶⁾)**
 - CEO/CFO의 공시통제 및 절차(DC&P,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등 내부통제 인증 빈도가 축소함에 따라, 내부 거버넌스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기존에 반기 보고를 선택했던 기업이 분기 보고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전 연도의 분기별 재무정보를 소급 작성하고 감사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미국 시장 특수성 (Glass Lewis)**
 - EU와 영국은 단기주의(short-termism) 우려 및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여 년 전 반기 보고로 전환하였으며, 일본도 2024년 분기 보고 의무를 폐지하였음
 - 다만 미국은 엄격한 공시 기준, 높은 유동성, 그리고 시장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해 왔음
 - 따라서 분기 보고 의무를 폐지한 해외 사례를 미국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시 의무 완화가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SEC는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한 60일 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규정 확정 여부 및 시행일은 미정임

5) SEC proposes optional semiannual reporting framework, PwC, 2026.05.07.

6) SEC Proposes Optional Semiannual Reporting for Public Companies in Lieu of Quarterly Reporting, Deloitte, 2026.05.08.

2. SEC, 기후공시 규칙 폐지 제안

구현지*

- 2026년 5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기후공시 규칙(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폐지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함¹⁾²⁾
 - SEC는 기후공시 규칙이 위원회의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해당 규칙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규칙 전체의 폐지를 제안함
 - SEC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책적 측면에서 기후공시 규칙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해당 규칙은 개별기업의 구체적 상황 및 중요성 판단에 기초한 공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해당 규칙은 미국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이 지향하는 정책적 고려 범위를 크게 벗어남
 - 해당 규칙은 일부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상 편익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수준의 상당한 비용을 부과함
 - 해당 규칙은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을 촉진하고 상장회사 지위를 장려하는 SEC의 정책적 목표와도 배치됨
 - 폐지 제안 발표와 함께, 폴 앳킨스 SEC 의장은 동 규칙의 폐지 제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SEC는 기업들이 상장회사가 되거나, 상장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편익을 재검토해야 함
 - SEC의 공시의무는 SEC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또한 기업의 행위를 사실상 지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예상되는 공시의 편익이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부담보다 더 클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SEC는 2024년 3월 6일 3대 2의 표결로 기후공시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칙은 온실가스 배출, 기후 관련 위험 관리 등 기후 관련 사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공시를 요구함
 - 채택된 규칙 최종안⁴⁾은 대부분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며, 공시대상회사가 증권신고서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 white07@cgs.or.kr

1) SEC Proposes Resciss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SEC, 2026.05.29.

2) Rescission of Climate Related Disclosure Rules, SEC, 2026.05.29.

3) Paul S. Atkins, Chairman, Statement on Proposing Release for Resciss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SEC, 2026.05.29.

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Release Nos. 33-11275;

(Registration statements) 및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에 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
- 주요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또는 주요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환계획(Transition plans),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 가격(Internal carbon prices)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 공시
- 이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경영진이 주요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데 수행한 역할에 대한 공시
- 주요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공시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Scope 1 / Scope 2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 해당 배출량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단계적 공시
- 극심한 기상이변(Severe weather events) 및 기타 자연조건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 등 재무제표상 영향에 대한 공시

- SEC의 규칙 개정 채택 이후 해당 규칙은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동 규칙에 대한 여러 법적인 제기가 등장함
 - 주정부, 기업 등 규칙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수의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s of appeals)에 해당 규칙의 사법심사를 청구함
 - 2024년 4월, SEC는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 규칙의 효력을 정지함
 - 2025년 3월, SEC는 기후공시 규칙에 대한 방어를 중단하기로 표결함
 - 2025년 9월,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동 규칙을 재검토하거나, 규칙에 대한 방어를 재개할 때까지 심리를 보류하기로 함
- SEC는 기후공시 규칙 폐지 제안을 발표하며, 본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8월 3일까지로 정함